# 제 12 회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제 2 소 위 원 회 심의·의결

안 건 번 호 제2023-212-217호

안 건 명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
피 심 인 (사업자등록번호: )

대표자

의결연월일 2023. 6. 14.

# 주 문

- 1. 피심인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.
  - 가. 과 태 료: 10,800,000원
  - 나. 납부기한 :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
  - 다. 납부장소 :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
- 2. 피심인 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내용 및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.

## 이 유

#### I. 기초 사실

PC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피심인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(2020. 8. 5. 시행, 법률 제16930호, 이하 '보호법'이라 한다.)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.

#### < 피심인의 일반현황 >

| 피심인명    | 사업자등록번호<br>(법인등록번호)              | 대표자 성명              | 주소   | 종업원<br>수(명)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|
| ㈜커넥트웨이브 | 117-81-40065<br>(110111-2551996) | 김기록,<br>정재웅,<br>김상혁 |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<br>233-1, 5층 501호<br>(목동, 현대드림타워) | 282명        |

#### Ⅱ. 사실조사 결과

#### 1. 조사 배경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포털(privacy.go.kr)에 유출 신고('21. 11. 2., '21. 11. 16.)한 피심인에 대하여 개인정보 취급·운영 실태 및 보호법 위반 여부를 조사('22. 12. 27. ~ '23. 4. 11., '23. 3. 14. ~ '23. 5. 2.)하였으며,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.

#### 2. 행위 사실

#### 가. 개인정보 수집현황

피심인은 PC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(

)를 운영하면서 '23.

1. 9. 기준으로 이용자

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다.

< 개인정보 수집현황 >

| 구분    | 항목  | 수집일                     | 건수           |
|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회원 정보 | (필수) 아이디, 비밀번호, 이름, 닉네임, 이메일<br>주소<br>(선택) 휴대전화번호, 주소, 계좌번호 등 | '00. 12. 21.<br>~<br>계속 | (유효)<br>(분리) |
|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
#### 나. 개인정보 유출 경위

< ① 개인정보 유출 사건('21. 11. 2. 유출 신고 건) >

#### 1) 유출 경과 및 대웅

| 일시           |       | 피심인의 유출 인지대응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--------------|-------|---|--|--|
| '21. 10. 19. | 16:20 | 내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장바구니 상품 조회 실패 등 이상 로그 발생 인지            |  |  |
| '21. 10. 29. | 09:25 | 로그 분석을 위해 수정한 소스코드 배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'21. 11. 1.  | 17:44 | 상세한 오류 발생 원인 파악을 위해 소스코드 재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'21. 11. 2.  | 09:12 | 추가 수정한 소스코드(오류가 포함된 코드) 배포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'21. 11. 2.  | 09:21 | 시스템 장애 관련 로그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인지 및 소스코드 수정 이전<br>버전으로 롤백 |  |  |
| '21. 11. 2.  | 17:35 | 개인정보 유출 고객 대상 유출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'21. 11. 2.  | 18:25 | 개인정보포털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
## 2) 유출항목 및 규모

이용자 10명\*의 이름, 주소, 휴대전화번호, 추가 연락처, 주문 상품 정보 등이 유출되었다.

\* 로그 분석 결과, 주문자 회원정보와 해당 주문정보를 열람한 자의 회원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는 총 10명으로 확인

## 3) 유출 경위

피심인의 소스코드 설정 오류\*로 '21. 11. 2. 09:12부터 '21. 11. 2. 09:21.까지 주문 목록 페이지( )에 접근한 이용자가 본인의 주문정보뿐만 아니라 로그인된 다른 회원들의 주문정보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. \* 담당자 실수로 \$marketPlaceMember[marketPlaceMemberSeq] = 0 ; 코드가 삽입된 채 소스코드가 배포되어 주문 목록 페이지에 접근한 회원의 고유번호가 0으로 변환되면서 당시 로그인된 모든 회원들의 주문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졌음

#### < ② 개인정보 유출 사건('21. 11. 16. 유출 신고 건) >

#### 1) 유출 경과 및 대응

| 일시           |       | 피심인의 유출 인지·대응 내용   |
|--------------|-------|--|
| '21. 6. 30.  | -     | 고객센터를 통해 주문한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 주문 관련 알림톡을<br>수신했다는 민원 접수(1차 인지) |
| '21. 7. 8.   | 09:12 | 원인 분석을 위해 수정한 소스 코드 배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'21. 7. 15.  | -     | 본인 주문내역에 다른 사람 주문정보가 등록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민원 접수 (2차 인지)          |
| '21. 7. 27.  | 16:43 | 로그 확인을 위해 소스 코드 수정 후 배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'21. 11. 8.  | 13:55 | 판매점으로부터 상품 오배송 관련 민원 접수(3차 인지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'21. 11. 9.  | 16:16 | 장애 원인 파악을 위해 로그 분석 진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'21. 11. 16. | 12:46 | 개인정보 유출 고객 3명 대상 유출 통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'21. 11. 16. | 12:52 | 개인정보포털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   |
| '21. 11. 17. | 10:04 | 결제 전·후 개인정보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기능을 추가한 소스코드 배포                  |
| '21. 11. 23. | 09:24 | 배송정보가 저장되는 전역변수를 지역변수로 변경한 소스코드 배포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2) 유출규모 및 규모

- 이용자 3명의 주소, 연락처, 이메일 주소가 유출되었다.
- ※ 로그 분석 결과, 이용자 2명의 상품 주문 시각이 100분의 1초 단위까지 동일한 경우, 전역변수에 동시 접근하여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음

## 3) 유출 경위

피심인은 '21. 6. 29. 개인정보 암호화 관련 개발 언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스 코드 설정 오류\*로 인해 해당 상품을 주문한 회원이 아닌 다른 회원이 입력한 배송정보가 주문자의 배송정보로 저장되었으며, 이를 주문자가 열람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.

\* 분석 결과, 전역변수에 주소·연락처·이메일 주소가 저장되도록 구현하여, 이용자 2명이

동시에 상품 주문을 하는 경우, 전역변수에 동시 접근하여 개인정보가 공유되는 문제가 발생

#### 3. 개인정보의 취급.운영 관련 사실관계

< ① 개인정보 유출 사건('21. 11. 2. 유출 신고 건) >

#### 가.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피심인의 소스코드 설정 오류로 인해 '21. 11. 2. 09:12부터 '21. 11. 2. 09:21.까지약 9분 동안 이용자 1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, 피심인은 취약점 점검 및테스트 없이 해당 소스코드를 운영 서버에 배포한 사실이 있다.

#### < ② 개인정보 유출 사건('21. 11. 16. 유출 신고 건) >

#### 가.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피심인은 '21.6.29. 개인정보 암호화 관련 개발 언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소스코드 설정 오류로 인해 이용자 3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, 피심인은 해당소스코드 배포 전 수정한 암·복호화 기능의 작동 여부에 대한 테스트는 진행하였다고소명하였으나 동시 주문 테스트 및 취약점 점검은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
## 나. 개인정보 유출 통지·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

피심인은 세 차례에 걸친 개인정보 유출 관련 민원('21. 6. 30., '21. 7. 15., '21. 11. 8.)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각각 인지하였으나, '21. 11. 16. 유출 통지·신고한 사실이 있다.

#### 4.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'23. 4. 17., '23. 5. 2.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, 피심인은 '23. 5. 2., '23. 5. 4.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.

#### Ⅲ. 위법성 판단

#### 1. 관련법 규정

가. 보호법 제29조는 "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,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제2호는 "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'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(마목)' 등의조치를 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은 "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위 기준 수립·시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「개인정보의 기술적·관리적 보호조치 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-3호, 이하 '고시') 제4조제9항은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처리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, P2P,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와모바일 기기에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나.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은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(이하 "유출등"이라 한다)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이 된 개인 정보 항목(제1호), 유출등이 발생한 시점(제2호), 이용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(제3호),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(제4호),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서 및 연락처(제5호)를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,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·신고해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이용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

조치를 취할 수 있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4제2항은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·도난·유출의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39조의4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제3항은 "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따른 통지·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면 그때까지 확인된 내용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우선 통지·신고한 후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확인되는 즉시 통지·신고하여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다.

#### 2. 위법성 판단

< ① 개인정보 유출 사건('21. 11. 2. 유출 신고 건) >

#### 가.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[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]

피심인이 주문 목록 페이지에 접근한 회원의 고유번호가 '0'으로 변환되도록 소스코드를 설정하고, 해당 소스코드 배포 전 취약점 점검 및 테스트 등을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,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.

#### < 피심인의 위반사항 >

| 위반행위   | 법률  | 시행령    | 세부내용(고시 등)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안전조치의무 | 보호법 | §48의2① | ・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|
| 위반     | §29 |        |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(고시§4⑨)      |

## < ② 개인정보 유출 사건('21. 11. 16. 유출 신고 건) >

#### 가.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

[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]

피심인이 전역변수에 주문자의 배송정보(주소·연락처·이메일 주소)가 저장되도록 구현하고, 해당 소스코드 배포 전 취약점 점검 및 테스트 등을 소홀히 한 행위는 보호법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, 고시 제4조제9항을 위반한 것이다.

#### 나. 개인정보 유출 통지·신고를 소홀히 한 행위

[보호법 제39조의4(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)제1항]

피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· 신고한 행위는 보호법 제39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것이다.

## < 피심인의 위반사항 >

| 위반행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률            | 시행령    | 세부내용(고시 등)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---|
| 안전조치의무<br>위반                       | 보호법<br>§29    | §48의2① | ・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<br>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행위(고시§4⑨) |
| 개인정보<br>유출등의<br>통지·신고에<br>대한 특례 위반 | 보호법<br>§39의4① | §48조의4 | •정당한 사유 없이 유출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을<br>경과하여 유출 통지·신고한 행위        |

#### Ⅳ. 처분 및 결정

#### 1. 과태료 부과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및 같은 법 제39조의4(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)제1항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·제12호의3,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, 같은 법 시행령 [별표2] '과태료의 부과기준' 및 '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'(이하, '과태료 부과지침')에

따라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.

#### < ① 개인정보 유출 사건('21. 11. 2. 유출 신고 건) >

#### 가. 기준금액

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,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으로 산정한다.

## < 보호법 시행령 [별표2] 2. 개별기준 >

|    | 위 반 사 항  | 근거법령             | 위반 횟수별 과태료 금액(만원) |       |       |
|----|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   |  |                  | 1회                | 2회    | 3회 이상 |
| 자. | 법 제23조제2항, 제24조제3항, 제25조제6항, 제28조의4제1항 또는<br>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| 법 제75조<br>제2항제6호 | 600               | 1,200 | 2,400 |

#### 나.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

## 1) 과태료의 가중

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'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2]의 가중기준(▲조사방해, ▲위반의 정도, ▲위반기간, ▲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, 사업규모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)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'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경우,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 및 [별표2] 과태료의 가중기준에서 정한 가중사유가 없으므로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을 유지한다.

## 2) 과태료의 감경

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'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1]의 감경기준(▲당사자 환경,

▲위반정도, ▲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, ▲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, ▲사업규모, ▲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, 사업 규모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)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.'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경우,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[별표1]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, '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경우' 및 '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'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%를 감경한다.

#### 다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·감경을 거쳐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| < | 과태료 | 산출내역 | > |
|---|-----|------|---|
|   |     |      |   |

| 위반행위(세부내용)              | 기준금액   | 가중액 | 감경액   | 최종 과태료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|
| <b>안전조치의무</b><br>(접근통제) | 600만 원 | -   | 300만원 | 300만원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300만원  |     |       |        |

## < ② 개인정보 유출 사건('21. 11. 16. 유출 신고 건) >

#### 가. 기준금액

보호법 시행령 제63조의 [별표2]는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기준금액을 규정하고 있고, 피심인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대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 및 같은 법 제39조의4 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을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으로 산정한다.

## < 보호법 시행령 [별표2] 2. 개별기준 >

| 위 반 사 항  | 근거법령             |     | 비반 횟수별<br>료 금액(만원) |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 |                  | 1회  | 2회                 | 3회 이상 |
| 자. 법 제23조제2항, 제24조제3항, 제25조제6항, 제28조의4제1항 또는<br>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법 제75조<br>제2항제6호 | 600 | 1,200              | 2,400 |
| 도. 법 제39조의4제1항(제3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이용자・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에 통지 또는<br>신고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통지<br>또는 신고한 경우 | 법 제75조           | 600 | 1,200              | 2,400 |

#### 나. 과태료의 가중 및 감경

#### 1) 과태료의 가중

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는 '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2]의 가중기준(▲조사방해, ▲위반의 정도, ▲위반기간, ▲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, 사업규모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)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.'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경우,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 및 [별표2]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따라 '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'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10%를 가중하고, 같은 법 제39조의4제1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8조 및 [별표2] 과태료의 가중기준에 따라 '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' 및 '제3호 위반행위별 각 목의 세부기준에서 정한 행위가 2개에 해당하는 경우'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20%를 가중한다.

## 2) 과태료의 감경

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는 '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와 당사자의 위반행위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[별표1]의 감경기준(▲당사자환경, ▲위반정도, ▲조사협조 및 자진시정 등, ▲개인정보보호 노력정도, ▲사업규모, ▲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, 사업 규모,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)에 따라 기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에서

감경할 수 있다.'라고 규정하고 있다.

피심인의 경우,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 및 같은 법 제39조의4제1항 위반행위는 과태료 부과지침 제7조 및 [별표1]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, '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을 완료한 경우' 및 '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'에 해당하여 기준금액의 50%를 각각 감경한다.

#### 다. 최종 과태료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 위반행위 및 같은 법 제39조의4제1항 위반행위에 대해 기준금액에서 가중·감경을 거쳐 총 7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| < 꾀대표 선물대학 2              |        |     |       |     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|--|--|
| 위반행위(세부내용)                | 기준금액   | 가중액 | 감경액   | 최종 과태료 |  |  |
| <b>안전조치의무</b><br>(접근통제)   | 600만 원 | 60  | 300만원 | 360만원  |  |  |
| 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·신고에<br>대한 특례 | 600만 원 | 120 | 300만원 | 420만원  |  |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80만원  |     |       |        |  |  |

< 과태료 산출내역 >

#### 2. 결과 공표

## < ② 개인정보 유출 사건('21. 11. 16. 유출 신고 건) >

보호법 제66조제1항 및 '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처분결과 공표기준'(2020. 11. 18.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) 제2조(공표요건)에 따르면 피심인의 위반행위는 '보호법 제7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2개 이상 한 경우(제4호)'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과태료 부과를 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에 공표한다.

##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정처분 결과 공표

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한 내용 및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.

| 순번 | 위반행위를<br>한 자 | 위반행위의 내용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행정처분!        | 의 내용 및 결과  |
|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   | 명칭           | 위반조항            | 위반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| 처분일자         | 처분내용       |
| 1  |              | 법 제29조          | 안전조치의무 위반<br>(접근통제)         | 2023. 6. 14. | 과태료 360만 원 |
| 1  |              | 법 제39조의4<br>제1항 | 개인정보 유출통지·신고<br>위반(지연통지·신고) | 2023. 0. 14. | 과태료 420만 원 |

2023년 6월 14일 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

#### V. 결론

피심인의 보호법 제29조(안전조치의무) 및 같은 법 제39조의4(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·신고에 대한 특례)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(과태료)제2항 제6호·제12호의3, 같은 법 제66조(결과의 공표)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결과 공표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###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

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「행정심판법」제27조 및「행정소송법」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피심인은 이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,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 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피심인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,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고 관할법원(당사자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)이 과태료 재판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. 이 경우 피심인은 관할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이후 재판 결과에 따라 과태료 납입 의무를 부담한다.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.

# 2023년 6월 14일

위 원 장 지 성 우 (서명)

위 원 강정화(서명)

위 원 염흥열(서명)